

「2025년도 생계지원사업」 공고

사업개요

운영 중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사망한 택시운전자 가정에
경제적 지원 도모

① 신청자격

- 근무시간 이내에 택시 운행 중 또는 중증질환으로 사망한 택시운전자의 유가족
 - * '택시 운행 중 사망'이라 함은 택시 운전, 승객·짐 승하차 및 사건·고장 시 조치 등 운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함
 - * '중증질환'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' 지원 대상자를 말함 (심혈관 질환, 뇌혈관 질환, 중증치매 및 중증빈혈은 제외)
 - * 기타 출퇴근 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

② 지원규모 : 300만원 (대상자 1인)

- * 우리재단 '중증질환치료비 지원사업'을 통해 치료비 200만원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중증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생계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자 1인 지원규모 300만원 중 100만원만 지원함

③ 지원기준 : 2020.1.1. 이후 사망

④ 신청방법

- 택시회사 또는 유가족이 직접 복지재단에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우편(등기)으로 제출
 - * 지역노사 또는 택시회사가 사망한 택시운전자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

5 제출서류 및 제출처

구분	서류명	발급기관	비고
제출 서류	(운행 중 또는 기타 사망의 경우)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또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) 1부	경찰서	원본
	(중증질환에 의한 사망의 경우) 진단서(의사소견서)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	병원	
	(공통)사망진단서 1부	병원	
	(공통)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1부	주민센터	
	(공통)재직 및 경력증명서 1부	택시회사	
	(공통)통장사본 1부	은행	사본
제출처	06211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61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복지재단 담당자 앞		

6 행정사항

- 신청기간 : 6.18(수) ~ 수시접수
- 대상자 발표 : 발생건별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
- 지원 : 접수된 건별 심사 후 적격자에 대해 즉시 지원

7 협조사항

-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
- 사고 내용이 위법(음주운전, 무면허, 택시운전자 자격 미취득 등)으로 판명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심사과정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